

2021년도 제3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0. 28.(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9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375건(안전번호 제2021-148398호~15026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148398호~148403호(순번 1번~6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와 출판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148404호~148456호(순번 7번~59번)는 블로그와 카페에서 일본 영상물(방송)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안전번호 148409호, 148412호, 148443호(순번 12번, 15번, 46번)는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여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
안전번호 148457호~150247호(순번 60번~1850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20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150248호~150269호(순번 1851번~1872번)는 웹하드 등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02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9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건에서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37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872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6번은 실명(3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와 출판물을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

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과 출판물 '★★★★★' 등을 각각 1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7개 게시물이임.

(순번 3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1화~제41화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와 출판물이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6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번~59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카페에서 방송 ‘●●●●●’, ‘◎◎◎◎◎’ 등을 우리말 자막 등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141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1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1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 ■ ■ ■’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함.
순번 14번, 25번, 27번, 38번, 40번, 42번, 51번, 54번 게시물의 경우 2021. 10. 22. 기준 비공개로 전환된 것이 확인됨. 다만 이 경우 게시물이 삭제·전송중단된 경우와 달리 시정권고의 대상인 심의대상 게

시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 서로이웃을 맺은 범위의 공중에
게 계속하여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 언제든지 전체공
개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개 게시물과 동
일하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또한, 순번 17번~20번, 35번, 37번, 47번~50번, 55번, 59번의 게시물
(카페)과 순번 8번, 13번, 31번의 게시물(블로그)은 2021. 10. 22. 현재
각각 '△△△△△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제한하고 있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제한 대상 게시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접
근이 제한되었다'는 안내가 출력되고 있음. 현재는 각 심의대상 게시
물에 접근할 수 없으나, 향후 접근제한 해제에 의하여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근이 가능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순번 12번, 15번, 46번(4건)의 게시물은 2021. 10. 22. 현재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
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7번~59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7번~59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다만, 12번, 15번, 46번의 경우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나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단,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을 함이 타당함.
- C, D 위원: 이견 없음. 모든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합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번~5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60번~185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출판 '노는 언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08번은 모바

일웹하드에서 방송 '노는 언니'를 93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7화 전체 분량인 1시간 25분 42초를 제공하고 있음. E채널에서 2021. 10. 19. 공개한 방송임. 웨이브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886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를 155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인 1시간 23분 59초를 제공 중임. 소니픽처스코리아가 2021. 10. 13. 공개한 미국 영화임.

(영화 '똥'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005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똥'을 228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인 2시간 28분 56초를 제공 중임. 워너브라더스코리아에서 2021. 10. 21. 공개한 영화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60번~185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60번~1850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0번~185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851번~187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 공개한 영화 ‘▽▽▽▽▽’가 부가판권시장 발매와 동시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됨에 따라 보호원은 해당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 심의를 요청함.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24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1851번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웹하드에서 영화 ‘▽▽▽▽▽’를 게시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을 185포인트에 mkv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를 복제·전송함으로써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순번 1851번~1872번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851번~187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851번~1872번은 최신 영화 저작물로서,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851번~187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8398호~150269호(순번 1번~1872번)는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3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1. 4.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